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이수옥 의원)

의 안 번 호	제2674호

발의년월일 : 2021년 10월 6일
발 의 자 : 이수옥, 서병완, 나상희, 유영주, 윤인숙, 심광식, 오진환, 신상균, 이재식, 임정옥, 조진호, 공기환, 이인락, 박종호, 정택진, 정순희, 최재란, 임준희 의원 (18명)

1. 제안이유

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장학생의 자격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 기준을 규정함(안 제4조 ~제5조)

라. 장학생 정원, 장학금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8조)

마. 장학금의 환수를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『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 설치 조례』,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나. 예산조치 :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

라. 기타

1) 개정안 : 별 첨

2) 조례안 예고 : 2021. 10. 6. ~ 2021. 10. 10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장학생은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설치 조례」에 따라 위촉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 한다.

②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하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, 학교로 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그 수령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매학년”을 “매 학년”으로,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”를 “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상훈법”을 “「상훈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구당 통장의 20퍼센트 범위내”를 “매년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”로,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통장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은 고등학생 50만 원,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”을 “범위에서 일부만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지급정지)”를 “(지급정지 및 환수)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”를 “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로 한다.

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장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
2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
제1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한다.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설치 조례」에 따라 위촉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 한다.
② 장학생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,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올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	②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하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, 학교로 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그 수령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.	제4조(추천) ------ 매 학년------- ----------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.
제5조(선발)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	제5조(선발) ---------- --- 사람을 ---------- ------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.

위를 조정한다. 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.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.·4. (생 략)	1. 「상훈법」---------- <삭 제> 3.·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장학생 정원)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2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.	제6조(장학생 정원) ------ 매년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---------- 범위에서 ---------.
제7조(장학금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	제7조(장학금) 통장자녀 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고등학생 50만 원,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. ---------- 범위에서 일부만 ----------. ---------- 범위에서 일부만 ----------.
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.	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. ----------. ----------.
제9조(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9조(지급정지 및 환수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장의 자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. 1.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

	게 된 경우 2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 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----------.
제11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1조(규칙) 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.

【관 계 법 령 】

□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설치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·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5.03.26〉

제2조(통·반의 조직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 각 행정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.〈개정 2015.03.26〉

②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.〈개정 2015.03.26〉

③ 〈삭 제〉